

## 「2025년 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영주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 및 우수인력 유치, 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「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」을 추진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3. 10.

[재]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### 접수방법

- 이메일 접수(gepa\_north@naver.com)

### 문의

-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:  
북부지소 ☎ 054-900-3801 (E-mail) gepa\_north@naver.com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(고객의소리, 국민신문고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

### 선정결과 통보

- 기업별 개별통보

# 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	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
○ 선 정 방 법 :	완비된 서류에 한하여 선착순 지원
○ 사 업 내 용 :	공고문 내용 참조
○ 사 업 기 간 :	선정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
○ 지 원 금 액 :	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(월세 80% 이내 지원) ※ 가족동거 근로자 추가지원 - 배우자 10만원, 자녀 1명당 5만원추가(총 한도 50만원, 100%지원)
○ 신 청 방 식 :	공고문에서 지정한 방식
○ 지 원 인 원 :	20명 정도
○ 신 청 서 접 수 일 시 :	2025.03.10.(월)
○ 신 청 서 접 수 마 감 일 시 :	예산 소진시까지

# 2. 추진절차



\*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 3. 사업목적

- 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,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해소
-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장기근속 유도

## 4. 지원조건

-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영주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
- 1개 업체당 최대 5명 이내 지원 한도
  - ※ 산업/농공단지 기업은 10명 이내 지원(산업(농공)단지 입주확인서 제출)
- 법인/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(월세) 체결
- 지원 근로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
- 선정된 기업(근로자)은 2025.1월~12월까지(12개월 동안) 기준으로 지원
-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(월세)의 80%이내 지원(1인당 월 30만원 한도)
  - 가족친화적 기숙사 임차비 추가지원

구분	지원내용	추가지원	비고
지원한도/월	30만원	배우자 10만원, 자녀 1명당 5만원 추가	최대 50만원
지원비율	80%	가족동거 근로자 100%	

※ 보증금 및 제세공과금(관리비 포함)은 이용 근로자 및 해당 기업체 자부담

## 5. 신청자격

- (자격) 관내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

## 《 지원대상업종 및 지원제외대상 》

### ▶ (지원대상업종)

-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
-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 수집, 운반,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
- ⑪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
- ⑫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

### ▶ (지원대상요건)

-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용도가 '공장' 또는 '제조업소'로 기재된 업체
- 건설업, 전기공사업, 정보통신공사업, 소방시설의 경우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
-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(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수송업, 여행알선·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)
-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(수출실적 증명 가능한 업체)
-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(여관업은 제외)
- 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
-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
-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보유한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

### ▶ (지원제외대상)

- 휴/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기재하여 신청한 기업
  - 사업주(대표자, 최대주주 및 전문경영인 포함), 등기 임원 및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
  -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  - 외국인 근로자
  -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
  - 파산·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
  -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
  -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※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

## 6. 신청방법

### □ 신청·접수

- (기간) 2025.3.10. ~ 사업비 소진 시
- (접수방법) 이메일 접수 gepa\_north@naver.com  
- 신청서류를 하나의 문서로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

### □ 신청서류

신청 서류	①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	⑨ 근로자 계약서 사본
	② 기숙사 임차 지원 대상 근로자 명부	⑩ 재직증명서
	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근로자)	⑪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
	④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약정서	⑫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 사본
	⑤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	⑬ 주민등록초본
	⑥ 사업자등록증 사본	⑭ 실거주자 명의의 전기요금 납부영수증
	⑦ 해당 업종 증빙서류	⑮ (해당시)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 각 1부
	⑧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	⑯ (해당시) 가족친화적 기숙사 인센티브 관련 서류 각 1부(최신 주민등록등본 등)

- 1) 제출서류는 신청일자 기준 신규 발급 필수.
- 2) 기타 증빙 서류(필요에 따라 개별 요청)
- 3) 산업(농공)단지 입주확인서는 해당되는 기업 한정 제출
- 4) 전기요금 납부영수증은 실거주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주자 명의의 납입내역 제출

## 7. 선정계획

### □ 선정방법 : 서류가 완비된 업체에 한하여 현장점검 이후 최종 선정

- 신청일(서류완비)로부터 산정 및 거주 사실 서류 검토(필요시 현장점검) 후 지원 대상 선정
- 서류 검토 시, 본 사업 목적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업체 대상에서 배제
-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 업체 선정(월 단위 모집)
- 업체별 **최대 지원한도**는 60개월  
(※ 개별근로자가 60개월 지원 받은 경우, 1년 휴식 후 다시 지원 가능)
- 2025.1월부터 소급적용(ex. 2025.3월 선정되더라도 1월에 주소이전 및 근무시 소급 가능)

## □ 지원방법

- 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 서류 검토 후 기업(근로자)계좌로 직접 송금
- 3개월 단위 사후 신청, 서류 확인 후 일괄 지급
- 비용신청 금액 및 부동산 계약자, 월세 이체계좌, 지원금 지급계좌명, 전기요금 납부자명이 일치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

## □ 기타사항

- 관외 거주자 영주시 전입여부 확인(※비정기적 현장점검 예정)
- 선정업체/근로자 위법 행위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조치
-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(※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월 지원 가능)
- 기숙사 이용 근로자 변경 시 변경 통보 필요